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

[시행 2019.10.7.] [총학생회칙 2019.10.7. 부분개정]

전문

대학은 자유, 정의, 진리의 대학이념 아래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연구로 사회의 진실을 밝히는 진리탐구에 정진해왔으며 그 역사적,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민족과 사회의 발전좌표를 제시해왔다. 이것은 일제하 민족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외세, 민족자주, 반독재 조국통일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대학전통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이다.

이에 충남대학교 학생은 창의, 개발, 봉사의 교시 아래 진리로 향한 학문탐구와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비판적 지성인의 양성과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민족분단의 극복과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전체학생의 자발적 충의를 모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을 2018년 9월에 개정한다.

목차

- 제1장 총칙
- 제2장 학생총회
-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제4장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집행부, 중앙운영위원회
- 제5장 총대의원회
- 제6장 단과대학 학생회
- 제7장 기타 기구
- 제8장 재정
- 제9장 선거
- 제10장 세칙 및 규칙
- 제11장 회칙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남대학교 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인 학문탐구를 통하여 대학의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학풍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사회발전과 진보적인 대중문화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충남대학교에 둔다.

제4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② 본교의 학사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정회원이 된다.

1. 제1학기 재학생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재학생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본교의 학사과정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정회원 등록기간은 제2항의 기간을 준용하며 기타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준회원 중 정해진 기간에 정회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정회원이 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대학의 자율성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7조(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집행부, 중앙운영위원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한다.

제8조(학교당국과의 협의)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및 후생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생 신분 및 본회의 활동에 대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④ 본회의 제반 회의는 본회의 활동상 필요하다고 그 회의의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학교당국에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대표자의 책임)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성원, 총대의원회의의 대의원 및 본회 기구의 임원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대표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대표자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제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①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생산·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열람·활용하려는 회원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
2. 감사·감독·계약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본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제2장 학생총회

제12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기구이다.

제13조(구성) 학생총회는 전체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5조(권한)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의결한다.

② 학생총회는 본회 기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16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성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정회원 1,0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②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개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학생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8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의 수임기구이다.

제19조(구성)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운영위원, 상임위원,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단과대학 대

위원회 부의장,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존립 및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의결한다. 단, 제49조의 업무는 제외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기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22조(소집)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성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회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집행부, 중앙운영위원회

제1절 총학생회장단

제24조(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되고, 총학생회 집행부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 다음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선출) 총학생회장단은 전체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할 권한

2.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3. 대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 소집요구

4. 총학생회 집행부 구성권 및 임면권

5. 총학생회 집행부 지휘·감독권

6. 회칙 개정의 발의 및 공포

② 총학생회장은 사업 계획을 총대의원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과 관한 학교행정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사퇴) ①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사퇴한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29조(탄핵) ① 대의원총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회·세칙의 중대한 사항을 위배 하였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발의 할 수 있다.

1. 총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2. 정회원 1,0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표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표결 전까지 대의원총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탄핵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총학생회 집행부

제30조(지위) 총학생회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1조(구성) ① 총학생회 집행부는 집행위원장과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학생회 집행위원장과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
2.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 집행
3.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 집행
4.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시행 준비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제33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4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총동아리연합회장, 교지편집위원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5조(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6조(업무 및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1.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
2. 예산 및 결산의 검토·조정
3. 회칙 개정의 발의
4. 대의원총회의 소집요구
5.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6.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
2. 총대의원회 의장의 소집요구
3. 상임위원회의 소집요구

제38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총대의원회

제1절 통칙

제39조(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상설 대의기구이다.

제40조(목적) 총대의원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건전한 학생자치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기구)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 총대의원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총대의원회 집행부, 단과대학 대의원회로 구성한다.

제42조(대의원의 자격) 총대의원회의 대의원은 총대의원회 의장단, 상임위원, 단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 학과 대의원으로 한다.

제43조(대의원의 선출) ① 학과 대의원은 학과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약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자유전공학부, 국가안보융합학부는 대의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② 학과 대의원은 학과마다 1명을 선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인원 또는 계열모집의 전공 배정인원이 100명이 넘는 학과는 100명이 넘을 때마다 1명을 더 선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1개 학과로 구성된 단과대학은 2명을 선출한다.

제44조(감사특별위원회) 총대의원회에 감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5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대의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절 대의원총회

제46조(지위) 대의원총회는 총대의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47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총대의원회 의장단, 상임위원, 단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 학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8조(의장)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단, 총대의원회 의장 사고 시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49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칙개정안 발의권
2. 회칙개정안 의결권
3. 각 기구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확정권

4. 학생회비 금액 및 배분 확정권
5. 각 기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승인권
6. 각 기구의 서무·회계 및 기타 업무에 대한 감사권
7. 총학생회장단 및 총대의원회 의장단에 대한 탄핵권
8. 총학생회장단 및 총대의원회 의장단에 대한 사퇴 허가권
9.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 집행부에 대한 인준 및 해임 의결권
10.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총학생회 집행부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권
11.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출권
12.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요구권
13. 총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 출석·발언권
14. 선거 및 감사 관련 부정행위 책임자에 대한 학교당국에의 징계 건의권
15. 학생자치기구 선거관리권
16. 전체 학생의 여론수렴
1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0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학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의 소집요구
2. 상임위원회의 소집요구
3.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개회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51조(의사진행) 대의원총회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대의원총회 의사진행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의결)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9조 제2호 및 제7호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총대의원회 의장단

제53조(지위) ①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총대의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총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총회 의장, 상임위원회 의장, 감사특별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고, 총대의원회 집행부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대의원회 부의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을 보좌하며, 총대의원회 의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대의원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임기) 총대의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 다음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총대의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5조(선출) 총대의원회 의장단은 총대의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56조(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내외적으로 총대의원회를 대표할 권한
2. 대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3.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요구
4. 총대의원회 집행부 구성권 및 임면권
5. 총대의원회 집행부 지휘·감독권
6. 회칙 개정의 공포

제57조(사퇴) ① 총대의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 총대의원회 의장이 사퇴한 경우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58조(탄핵) 총대의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탄핵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총대의원회 집행부

제59조(지위) 총대의원회 집행부는 총대의원회의 집행기구이다.

제60조(구성) ① 총대의원회 집행부는 집행위원장과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대의원회 집행위원장과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임면한다.

제61조(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
2. 대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업무 집행
3. 총대의원회 의장단이 결정한 업무 집행
4. 대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시행 준비

제5절 상임위원회

제62조(지위) 상임위원회는 대의원총회의 수임기구이다.

제63조(구성) 상임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의장단 및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제64조(의장)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단, 총대의원회 의장 사고 시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65조(업무 및 권한) ① 상임위원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제49조 제2호, 제7호, 제11호는 제외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칙 개정 발의권
2. 중앙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권
3.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4. 본회의 유권해석권
5. 총대의원회 서무·회계 및 기타 업무에 대한 감사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6조(소집)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3. 총대의원회 의장의 소집요구
4. 상임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

제67조(의결)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1절 단과대학 학생회

제68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69조(회원)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에 소속된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70조(기구)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총회,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단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학과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71조(회장) ①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전체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72조(회칙)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진다.

제2절 단과대학 대의원회

제73조(지위)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의 상설 대의기구이다.

제74조(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의결권
2. 각 기구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확정권
3. 각 기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승인권
4. 각 기구의 서무·회계 및 기타 업무에 대한 감사권
5. 학생자치기구 선거관리권
6. 단과대학 학생의 여론수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5조(의장) ①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단과대학 전체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단과대학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이 된다.

제3절 학과 학생회

제76조(지위)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77조(회원)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에 소속된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78조(회칙) 학과 학생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진다.

제7장 기타 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제79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80조(구성)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와 동아리인 전체로 구성한다.

제81조(회장) 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은 동아리대표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82조(동아리대표자) 동아리대표자는 각 동아리의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제83조(기구)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인총회,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84조(분과) 분과는 총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 간의 연합 조직이다.

제85조(등록) ① 동아리등록은 총동아리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동아리등록 시에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활동 및 운영) 총동아리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동아리연합회칙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절 교지편집위원회

제87조(지위) 교지편집위원회는 본회의 교지 발행을 담당하는 자치 언론기구이다.

제88조(구성) 교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총무를 포함한 편집위원과 수습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9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교지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총무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90조(편집의 자유) 교지편집위원회는 편집의 자유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91조(활동 및 운영) 교지편집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92조(목적)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정상화와 연속성 유지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3조(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

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단 재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2. 정·부총학생회장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잔임기간이 240일 미만인 경우
 3. 정·부총학생회장 두 명 모두가 탄핵되고, 잔임기간이 240일 미만인 경우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4조(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총학생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정·부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총학생회 집행부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95조(명칭)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충남대학교 제00대 총학생회 대행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단, 정·부총학생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설립된 경우 차수를 기입하여 종전의 비상대책위원회와 구별할 수 있다.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사유가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과 상임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사유가 발생한 후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정·부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2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의 투표로 정·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정·부비상대책위원장 후보자 확정과 선출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제97조(비상대책위원장) ① 정·부비상대책위원장은 2인 1조가 되어 공동 입후보하여야 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정·부비상대책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교지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98조(집행위원) ①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집행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3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9조(해체) 차기 총학생회장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해체한다.

제100조(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① 제93조에서 제95조까지의 규정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01조(총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① 제93조에서 제95조까지의 규정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4절 특별기구

제102조(지위)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구이다.

제103조(성립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할 수 있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될 때
2. 본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요구될 때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범기구적 연합 또는 대표 단체가 요구될 때

제104조(심의) 상임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이 있으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단체가 제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활동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회원 300명 이상의 추천이 있는 추천서

제105조(재정)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에서 재정을 배분 받는다.

제106조(자치규칙) 특별기구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규칙을 가진다.

제8장 재정

제107조(원칙) 본회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08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교비 지원금, 자체조달경비로 한다.

제109조(자체조달경비) ① 자체조달경비는 수익사업 이익금, 격려금,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② 수익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격려금, 기부금 및 후원금은 수입 발생 3일 이내에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10조(계좌) ① 일반계좌는 학생회비를 주요 수입으로 하여 본회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학생회비 수납, 대형 행사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계좌를 둘 수 있다.

제11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회계연도를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의 회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12조(회비의 책정) 회비의 인상 및 인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상임위원회가 심의·승인한다.

제113조(회비의 수납) 회비는 학교당국의 협조를 받아 매 학기 총학생회에서 수납한다.

제114조(회비의 배분)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회비 배분안을 검토·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는 회비 배분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총대의원회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기마다 회비 배분안을 검토·조정하여 학생회비 납부 마감 후 20일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학생회비 납부 마감 후 4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회비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에 배분하며 잔여 금액은 총학생회에 배분한다. 단,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에서 별도로 배분한다.
- ④ 학생회비 납부 마감 후 수납한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에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예산의 편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안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전까지 총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소정 기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50%를 집행할 수 있다.
-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총대의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총대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6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의 집행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 ②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집행에 대하여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7조(결산의 보고) ①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기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소정 기일까지 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과대학 대의원회 및 특별기구는 「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에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소정 기일까지 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감사) ① 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 기구의 활동 및 운영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감사특별위원회는 제117조에 따라 제출된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선거

제119조(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120조(선거시기) 선거는 임기 개시 전년도의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1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각 선거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 ① 선거권
 1. 총학생회장단 선거 : 정회원
 2.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 : 총대의원회의 대의원
 3.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 동아리대표자
- ② 피선거권
 1. 총학생회장단 선거 : 정회원

2.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 : 총대의원회의 대의원

3.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 정회원

제122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총대의원회 의장단 및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자
2.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12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장단, 총대의원회 의장단,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제124조(입후보) ① 정후보자와 부후보자는 2인 1조가 되어 공동 입후보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5조(징계) ① 선거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정명령, 주의, 경고 및 자격박탈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주의가 3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의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③ 선거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6조(투표)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등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7조(당선) ①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에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단독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128조(재선거) 재선거는 선거의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129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 등이 임기 중 궐위된 때 잔임기간이 240일 이상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30조(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제외하고 정식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31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0장 세칙 및 규칙

- 제132조(세칙 및 규칙)** ① 본회는 본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 ② 본회는 본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33조(해석)** ①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 ③ 본 회칙에 위반되는 본회 기구의 회칙과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 제134조(규정집)** ① 총대의원회는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본회 회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회 기구는 규정의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장 회칙개정

제135조(발의)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의된다.

1. 총학생회장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3.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
4.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5. 정회원 5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제136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137조(의결) ① 대의원총회는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8조(공포) 총대의원회 의장은 개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회칙 시행 당시 본회의 기구 및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한 기구 및 임원으로 본다.

② 본회 기구는 본 회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본 회칙이 위임한 각종 세칙 및 규칙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관례의 종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